

직장예비군연대규정

제정 2009.03.01
2차 개정 2021.02.22

1차 개정 2012.01.01
3차 개정 2021.04.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예비군 연대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있어 예비군법에 의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개정 2021.02.22.>

제2조(명칭)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예비군자원은 우송대학교에 통합·편성하여 우송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이하 “예비군연대”라 한다.)라 한다.

제3조(직제) 삭제 <2021.02.22.>

제2장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4조(편성 방침) 본 대학 및 우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02.22.>

제5조(예비군편성) 예비군편성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종합정보 시스템상에 예비군 보류원서를 입력한 자원을 대상으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 및 승인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1.02.22.>

제6조(신상이동통보) 예비군 대원은 인적사항, 신상변동 및 병적사항 변동시 그 변동사항을 예비군연대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예비군연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휴직, 면직, 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때에는 본 대학 예비군대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된다. <개정 2021.02.22.>

제8조(자원관리) 예비군자원관리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관리한다.

제3장 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적용) ① 학생예비군으로서 1학기이상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명시된 8시간을 실시한다. <개정 2021.02.22.>

②삭제 <2021.02.22.>

③삭제 <2021.02.22.>

④해당년도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 2차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 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02.22., 2021.04.05.>

⑤학생(대학원생 포함)예비군을 제외한 일반예비군은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1.02.22.>

⑥해당년도 방침보류자 신분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 시간보다는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처리하며,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1.02.22.>

제10조(훈련보류 및 연기) 교육훈련을 보류 및 연기하고자 할 때는보류 및 연기원서 1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예비군연대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제11조(훈련통지) 교육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통지서를 학과(부)에 의뢰하여 교부하되 홍보수단(안내문 공고, 이메일, 문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훈련 참여율을 향상 시킨다.

제12조(불참자 처리) 교육훈련 불참자는 수임군부대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별도의 보충 교육을 실시하며 3차훈련을 무단 불참시는 고발조치 한다. <개정 2021.04.05.>

제13조(국의 출·귀국자 관리) ①국의 출·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연기처리하며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 <개정 2021.02.22.>

②해외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 출/귀국자 명부를 주1회 출력하여 관리/유지 한다.

제4장 동원지정자원관리

제14조(동원지정자원관리) ①예비군동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동원 하며, 신속한 동원에 대비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동원지정 된 학생예비군 동원자원을 관리한다.

②동원지정된 교직원 예비군자원중 동원훈련자원(증·창설요원)은 동원훈련계획일정에 의거 동원훈련입소 조치한다.

③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동원지정 자원을 출력하여 동원대체지정자 및 삭제자명부와 대조 최신현황을 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